

1. 개정이유

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56호, 2025. 1. 31. 공포, 2026. 2. 1. 시행)됨에 따라, 별도의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, 예약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철도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정의(제4조의5제2항 신설)

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, 그밖에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로 인정하는 자로 규정

나.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 예약방법 규정(제4조의5제3항 신설)

온라인 예약, 전화 예약 및 예매창구를 통한 현장 예약 서비스 제공 의무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5(철도의 이용 보장 등)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을 운영해야 하며, 설날 및 추석 등 철도 예약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편의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
3. 그 밖에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로 인정하는 자

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방법은 온라인 예약, 전화 예약 및 예매창구를 통한 현장 예약(승차권을 발행하지 않는 간이역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5(철도의 이용 보장 등)</u> ① <u>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을 운영해야 하며, 설날 및 추석 등 철도 예약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편의를 제공해야 한다.</u> ② <u>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u> <u>1.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</u> <u>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</u> <u>3. 그 밖에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로 인정하는 자</u> ③ <u>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방법은 온라인 예약, 전화 예약 및 예매창구를 통한 현장 예약(승차권을 발행하지 않는 간이역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</u>